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방안 권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임야의 대부료(사용료) 요율 조항 구체화(안 제27조)
- 나. 대부료(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 및 내용 추가(안 제31조)
- 다. 기초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른 '1급 관사' 용어 삭제(안 제47~49조)
- 라. 관사에 대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으로 개정(안 제53조)
- 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변경(안 19조, 6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087(2023. 8. 25.)]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55호
 - 가) 예고기간: 2023. 8. 25.~2023. 9. 14.(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서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져 올”을 “가져올”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제34조제2항”을 “영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할 지라도”를 “할지라도”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대부하는 경우
⑦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건비,토지”를 “인건비, 토지”로 한다.

제41조 중 “이바지할수”를 “이바지할 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위치·규모”를 “위치, 규모,”로 한다.

제47조 중 “군수·부군수”를 “부군수”로,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공용주택”으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51조 중 “비치정리”를 “비치·정리”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부서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담당 국장</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u>가져올</u>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재산의 보존) ----- ----- <u>가져올</u> ----- ----- -----.</p>
<p>제19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p> <p>⑤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용료가 <u>1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u>제34조제2항</u>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9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50만원</u>----- ----- ----- ----- --- <u>영 제32조제2항</u>----- -----.</p>
<p>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생략)</p>	<p>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가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 6. (생략)

⑥ (생략)

⑦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할지라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대부하는 경우

2.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⑧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대부료의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지역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하는 시설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

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원 초과: 100분의 20

다.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10

3. 삭제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 설>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

-----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
--.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채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4. (생략)

④ (생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일정기간 동안 -----

3.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 매각) ① -----

-- 인건비, 토지 -----

-----.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
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
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청사 및 중
합회관(이하 “청사 등”이라 한
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위
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
여 건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
함한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3. (생략)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

제41조(공유임야관리) -----

----- 이바지
할 수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위
치, 규모,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의) -----
-- 부군수 -----

----- 공용주택 -----

-----.

제48조(관사의 구분) -----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용허가) -----

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
하지 아니한다.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
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
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
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
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보일러 운영비
4. (생 략)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 . ---- 2급

-----.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비치·정리 -----

-----.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고시이자율을 적
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후
단 신설 2014.08.06. 조 2154>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 4. (생 략)

② (생 략)

-----.

2. 50만원 -----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사용료) 감면 조항 미비점 보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재무과장 최 대 석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⑥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